# 리프트와 공장 건물에 끼임

#### 재 해 개 요

'15. 9월 경북 경산시 소재 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탑승 후 운전스위치를 직접 조작하여 내려오던 중 리프트와 공장 바닥 끝단면 사이에 안면부가 끼여 사망한 재해임

### 재 해 상 황 도



권과방지장치 유반구 2중(바닥) 2m 1중(바닥) 1중(바닥)

기인물: 리프트

재해상황도

# 재해발생상황

-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재해자가 탑승하였다가 바깥으로 얼굴을 내민 순간 운반구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운반구 상단부와 공장 2층 바닥에 얼굴이 끼인 것으로 추정
  - ※ 기인물 : 일반작업용 리프트

- 적재하중 : 0.5 ton

- 제작년도 : 2006년

- 승강높이 : 7.7 m

- 운반구 : W120cm x L120cm x H200cm

○ 와이어로프가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 하는 로프이완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와이어로프에 매달린 운반구가 정지하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계속 풀려 운반구가 갑자기 낙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

# 재해발생 원인

-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
- 운반구 내부에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끼임 재해 발생
- 훅 해지장치 미설치
- 훅 해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느슨해지자 운반구 연결부에서 호이스트 훅이 빠짐

#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근로자 탑승 금지
-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·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시켜야 함
- 훅 해지장치의 설치
-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훅 해지장치를 구비한 호이스트를 사용하여야 하며, 그 크레인을 사용 하여 집을 유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함

# 관련 법규
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(탑승의 제한)
- ③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·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리프트의 수리·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(해지장치의 사용)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(이하 "해지장치"라 한다)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,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 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.